

Deloitte Insights

Flash Report

February 2026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미국 상호관세 위법 판결 영향과 기업의 점검 사항

Deloitte Insights

Deloitte.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01. 미국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트럼프 행정부의 플랜B

01. 대법원 판결

- ✓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합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
 - 소송 핵심 쟁점이자 판결 요지는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것
 - 더불어 다수 의견 중 보수 대법관 3명은 '행정부가 국가 경제와 외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권한을 행사하려면 의회의 명확한 승인이 필요하다'는 중대 질문 원칙 적용

02. 판결 영향

- ✓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4월 2일 명령한 보편 및 상호관세, 펜타닐 유입을 근거로 한 중국, 캐나다, 멕시코 대상 관세 등 위헌 판결. 다만, 관세 환급은 별개의 문제로 강제하지 않았으며 기존 체결된 협정은 판결과 별개로 합의 통해 유지 가능한 것으로 보임

03. 행정부 플랜B

- ✓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글로벌 관세 15% 부과 방침을 발표하고, 기존에 시행 중인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 외에 무역법 301조를 유력하게 활용할 방침. 이 외에도 무역법 201조와 관세법 338조 등도 활용하는 '플랜B' 총동원 가능성을 시사*

*행정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관세 활용 무효화한 것이 아니라 IEEPA에 근거한 관세만 거부한 것으로 보고, 관세 부과 근거가 명시된 법 활용 방침과 함께 기존 무역 협정은 유지할 것임을 피력. 특히 이를 위해 특정 국가와 품목을 상대로 무역 협상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인 무역법 301조를 적극 활용할 방침

표 1. 미국 행정부 관세 부과근거 및 시행, 플랜B 가능성 종합

항목	상호관세 (위법판결)	품목관세 (시행 중)	글로벌관세 (시행예고)	보복관세 (유력검토)	세이프가드 (가능성)	글로벌관세 (가능성)
법적 근거	IEEPA	무역법 232조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	무역법 201조	관세법 338조
발동 요건	국가 비상 사태	국가안보 위협	심각한 국제지불 문제	불공정 무역관행	국내 산업 피해	외국의 차별행위
대통령 권한	광범위 거래 규제	수입물량 조절 위한 각종 조치	관세 및 수입 쿼터	양허 정지/철회/ 제한, 관세, 수입제한	관세, 쿼터, 지원 등	관세, 수입제한 등
대상	가변적	전략 품목	가변적	가변적	가변적	가변적
세율	가변적	가변적	최대 15%	가변적	최대 50%	최대 50%
기간	무제한	무제한	최대 150일	4년(연장 가능)	기본 4년 최장 8년	무제한
절차	불필요	상무부 조사	불필요	USTR 조사	USTR 조사	불필요
의회 승인	필요 없음	필요 없음	기간 연장 필요	필요 없음	필요 없음	필요 없음

출처: 딜로이트 인사이트

*본 보고서는 2026년 2월 23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02. 미국 관세 정책 재조정 영향 점검

01. 실질 관세율 하락과 거시경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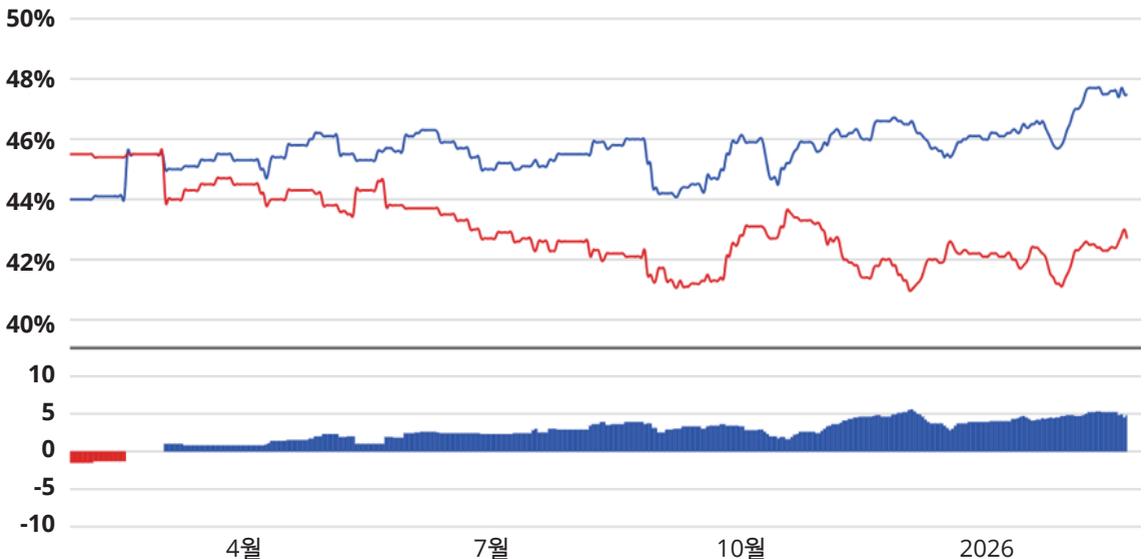
- ✓ 기존 고율 상호 관세가 무효화됨에 따라 세계 경제는 실질 관세율 하락*에 따른 수혜(인플레이션 감소, 미국 소비자 구매력 증가. 지정학적 긴장 감소와 대미 수출 증대)가 기대되나, 당분간 관세 환급을 둘러싼 잡음과 수퍼 301조를 활용한 미국의 고강도 압박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

*기존 IEEPA 관세가 미국 전체 관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기존 실효관세율 철폐 시 평균관세율이 8% 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122조 및 232조 관세로 이를 대체하여 실효관세율은 1.5~3% 하락할 것으로 추정 (키움투자증권)

02. 관세 연장 여부와 정책 불확실성

- ✓ 무역법 122조에 따른 15% 관세 부과 기간은 150일(2026.02.24~07.24)로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지만, 11월 예정된 중간 선거 전까지 승인을 얻는다고 해도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할 경우 연장이 불가능. 수출 기업들은 301조 등 고율 관세가 부과될 위험에 대비하여 선적 규모를 크게 늘릴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 요인

그림 1. 미국 중간선거 전망



출처: RealClearPolitics(2026년 2월 23일 현재)

03. 재정 및 거시 영향

- ✔ 중장기적으로 미국은 관세 수입이 감소하여 국채 발행 규모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율 하락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어든게 할 것이나 무역수지 적자는 확대될 수 있음
- ✔ 미국의 IEEPA 활용 상호관세 등 관세 수입액은 약 1,700억 달러로 추정(GDP 0.5% 수준)
- ✔ 관세 환급은 절차 마련 시간과 환급 소송 제약이 예상되며, 2만 4,000개 수출 기업 중 6,000개 기업이 DDP 방식을 적용해 관세 이익을 회수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 규모는 전년도 경상수지(1,200억 달러)의 5%(60억 달러) 이내가 될 것으로 예상(한화투자증권, DS투자증권 등)

04. 정치적 대응 전략

- ✔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타격이 중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인 부양책(감세, 금리인하, 규제완화)을 실시하는 한편, 대외 개입 및 군사행동을 강화하여 관심을 외부로 돌리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음

05. 산업별 통상 압박 확대

- ✔ 당분간 미국은 232조 품목 관세 외에 수퍼 301조 보복 관세 압박 카드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도 이러한 정책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 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 “무역법 301조 관련 브라질과 중국에 대한 조사 개시했으며,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조사(아시아 여러 국가 대상)도 시작할 예정이며 해외 쌀 시장도 들여다보고 있어. 이들 조사는 주요 교역 상대국 대부분을 커버할 것으로 예상”
- ✔ 미국은 지난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의약품, 항공기 및 제트엔진, 드론, 풍력터빈, 로봇 및 산업기계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 또한 반도체 및 파생상품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며 기존 관세 조치를 확대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

06. 한국 영향 및 대응 변수

- ✔ 한국의 경우 자동차 및 부품 15%, 철강 및 알루미늄 50% 관세는 유지(무역확장법 232조 전략 품목 관세)되며, 기존 IEEPA 근거 상호관세 15%는 무효가 되는 대신 무역법 122조 근거 최대 15% 관세 적용(범위 불분명) 예정이나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예외 여부가 관건

*무협 “미국 관세는 ‘최혜국대우(MFN) 관세+무역법 122조 15% 관세’ 구조로 전환하며, 한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효과로 ‘FTA+15%’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 적용 예정”. 한미FTA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한해 MFN 면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경우 MFN+15% 관세에 비해 가격 경쟁력 우위를 회복할 여지가 있으므로 원산지 관리가 중요해짐

03. 기업의 점검 사항

01. 관세 정책의 법적 지속 가능성 점검

- ✔ 트럼프 행정부가 고강도 관세 활용 정책에서 물어날 가능성은 지극히 낮으며, 품목별 국가별로 관세 구조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기존 협정 중에서 유리한 항목은 최대한 활용하되, 기민하게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함

02. 통상 압박 및 법적 리스크 대비

- ✔ 무역법 122조 관세의 경우 대법원의 “모든 조세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판결에 따라 새로운 관세 소송 등 법적인 도전에 직면할 수 있음. 나아가 현재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이 조항에서 근거로 명시한 근본적인 국제수지(지불) 문제인지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음
- ✔ 또한 다양한 무역법과 관세법이 관세 부과 권한을 명시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의회를 거치지 않고 광범위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는 행위 자체는 권력분리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03. 법 조항별 대응 전략 정비

- ✔ 앞으로 미국 관세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로 무게 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품목이 확대되고 품목별 관세율이 상향될 수 있음. 다만 과거 301조 관세 부과 사례는 최소 6개월~1년 이상의 법적 절차 기간이 소요되었으며, 232조는 국가 안보 위협을 다루는 법정 조사 기간이 최대 270일에 달하여 특정 품목으로 대상이 제한

*무역법 301조의 경우 지식재산권 침해, 보조금 지급, 시장 접근 차단, 디지털 규제 등으로 미국 기업을 불공정하게 대우했다고 판단할 경우 USTR이 조사를 진행한 뒤 해당 국가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이러한 불공정 대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음(쿠팡의 301조 조사 개시 청원 사례)

*무역법 232조의 경우 한국 주력 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이 미국 국가안보 및 공급망 재건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다는 점과 함께 실제 투자와 고용창출 등 협력 성과를 제시하여 예외 적용을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

*관세법 338조는 죽은 법이라고 치부되어 왔지만, 이는 조사 절차가 필요 없고 미국 제품이 해외에서 차별을 받을 때 최대 50%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미국 제품의 차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하게 대응 관리해야 함

04. 한미 협정 이행 및 대미 협상 관리

- ✓ 한국이 미국과 기존 무역 협정과 대미 투자 이행을 거부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경우 다른 보복 조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협상은 유효하다고 보고 특별법 입법 및 투자 실행 점검 등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음
- ✓ 기존 협정을 체결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지켜보면서 현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고, 미국 정부 및 재계와 긴밀한 소통 창구를 확보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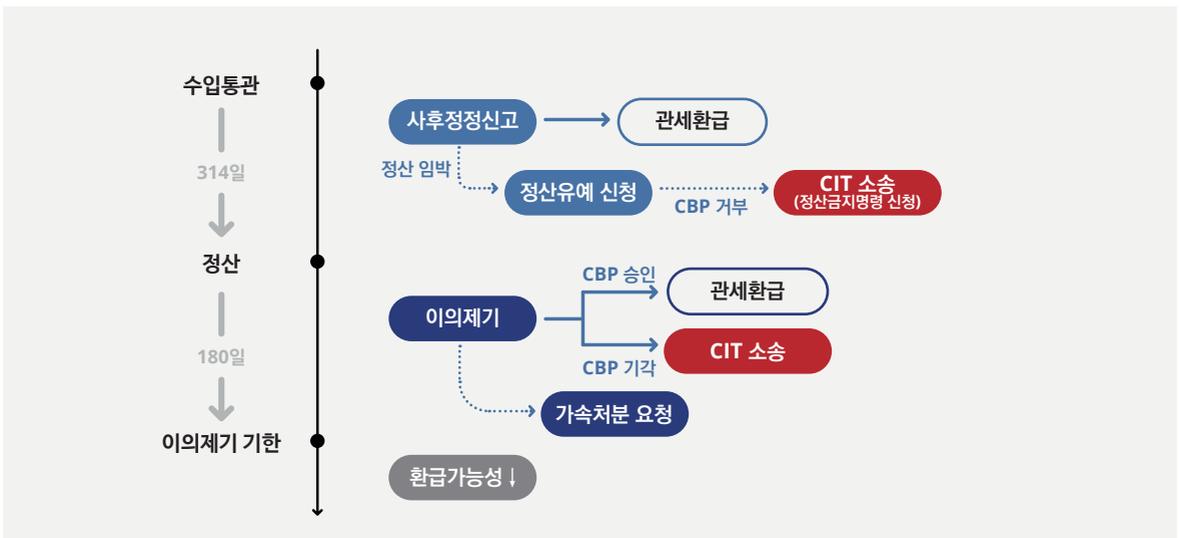
05. IEEPA 관세 정산 및 환급 절차 대응

- ✓ IEEPA 관세의 정산은 관세 부과 시점(25.04.05)부터 314일이 지나는 2월 13일부터 도래하며, 관세 환급 절차는 관세액이 확정되는 정산일 전에 '사후정정신고'를 통해, 정산일 후에는 이의 제기 통해 진행하며 정산 완료일 180일 이내 제기해야 함. 이의 제기는 법적 절차 성격이 강해 접수 시점에서 최대 2년 수입 통관 시점 기준 최대 3년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결과에 불복할 경우 국제무역법원(CIT) 제소를 통한 사법적 구제 절차를 진행해야 함

06. 환급 대상 범위 및 절차 리스크 관리

- ✓ 대법원 판결문에 환급 절차나 방법, 시기, 담당기관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이번 대법원의 Remand(하급심으로 환송) 결정에 따라 CIT가 환급 대상의 범위, 절차 등을 결정. 미국 로펌들 사이에서는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실제 환급이 완료되는 데에는 더 긴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그림 2. 미국 관세 환급 절차



출처: 한국무역협회(KITA)

07. 판결 영향 범위 명확화

- 이전 판결은 상호관세 15%와 중국 및 멕시코에 대한 펜타닐 관세 20%에 대한 판결로, Section 232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머시닝센터) 함량 기준으로 부과되는 50% 관세와는 무관. Section 232에 따라 50% 관세가 부과중인 경우 향후 상호관세(Section 122 또는 이후 조치)가 적용될 때 기존 232조 50%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상호관세가 적용됨

08. Action Plan

- 2025년 4월 5일부터 지금까지 통관된 것을 전수 조사해서 Liquidation 여부를 체크하고, 시스템 화면 스크린샷 저장 (통관 대행사에 일괄하여 정리 가능)
- Unliquidated Entries: 사후정정신고(PSC) 진행 여부를 통관 대행사와 협의 (주의사항: 상호관세 환급을 위해 PSC를 제출하였으나,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가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가치를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시점에 대한 고려 필요. 최근 한국 기업에 대한 추정도 개시된 바 있어 주의를 요함)
- Liquidated Entries: Protest를 미리 작성해 두었다가, 국제무역법원(CIT) 결정 직후 제출

그림 3. 철강 232조 대상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

	2/20(금) 이전	2/21~23(월)	2/24(화)~
철강함량가치	MFN관세+50%	MFN관세+50%	MFN관세+50%
비철강함량가치	Min(MFN관세+15%, 15%)*	MFN관세	MFN관세+10%

*상호관세는 기존 MFN관세가 존재하는 경우, 최대 15%까지만 부과 가능

출처: 딜로이트 One Trade Advisory



한국 딜로이트 그룹 산업 전문가

통상&디지털 통합서비스 그룹 (One Trade Advisory)

한국 딜로이트 그룹의 통상&디지털 통합서비스 그룹(One Trade Advisory)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정책 변화와 글로벌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통상&디지털 통합서비스 그룹은 반덤핑, 관세, 이전가격, 국제조세 및 공급망 재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적 지식과 업무경험을 통해 기업이 국제통상 질서 변화에 대한 최적의 대응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배두용 리더

통상&디지털 통합서비스 그룹 리더

☎ 02 6099 4847
✉ doobae@deloitte.com

심종선 파트너

국제통상자문 리더

☎ 02 6138 5045
✉ jonshim@deloitte.com

유정곤 파트너

관세자문 리더

☎ 02 6676 2561
✉ jyou@deloitte.com

김선형 이사

이전가격자문 리더

☎ 02 6138 5275
✉ seonhykim@deloitte.com

Scott Oleson 파트너

국제조세 리더

☎ 02 6676 2012
✉ scoleson@deloitte.com

심윤수 이사

규제 리스크 자문 리더

☎ 02 6676 3376
✉ yunshim@deloitte.com

김승영 이사

국제통상자문 미국 변호사

☎ 02 6138 5346
✉ seungyoukim@deloitte.com



앱



카카오톡 채널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Download on the
App StoreGET IT ON
Google Play

Deloitte.

Insights

성장전략부문 대표

손재호 Partner
jaehoson@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장

박경은 Director
kyungepark@deloitte.com

Contact us

krinsightsend@deloitte.com

연구원

김사현 Director
sahekim@deloitte.com

디자이너

박근령 Senior Consultant
keunrpark@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